

# 계류 중인 건축물 미술장식법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 : 박찬국 (밀머리미술학교 대표)

발제 1 : 건축물 미술장식법 개정 경과와 문제 ..... 2  
박삼철 (미술인회의 공공미술위원장)

지정질의 : 전용석 (작가, 플라잉씨티 대표)

발제 2 : 계류 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와 조정방안 ..... 9  
윤태건 (The Ton 대표)

지정질의 : 조관용 (미술평론가)

발제 3 : 예술공론장으로서의 새로운 공공미술 ..... 21  
김준기 (공공미술추진위원회 팀장)

지정질의 : 박찬경 (작가, 미술평론가)

첨부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안 ..... 29

# 건축물 미술장식법 개정 경과와 문제

박삼철, 미술인회의 공공미술위원장

## 1. 서(序)

1972년 건축물 미술장식조항이 권장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도입된 지 30여년이 흘렀다. 이 제도는 문화예술 진흥과 삭막한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그 누구도 쉽게 거부하기 힘든 두 가지 목표를 내세우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문제 아닌 적이 별로 없었다. 과연 이 제도는 목표를 이를 꿈을 꾸고 있는가? 목표를 지향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가? 너무나도 명시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미술이 낀 도시 풍경은 여전히 삭막하고 억압적이다. 이런 미술을 설치하는 일은 ‘나까마’와 장사하는 작가, 화랑들의 이윤을 진흥하고 있다. 살만한 도시를 꿈꾸는 예술가의 좌절과 한숨을 진흥하고 있다.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그 이름에 걸맞게 미술도 없고 공공성도 없는 빈껍데기인 채 30여 년간 도시에 미술이 있는 것처럼, 문화정책에 공공미술이 있는 것처럼 환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미술장식의 현상 역시 이런 의문을 더욱 부추긴다. 광장, 공원, 공항, 터미널 등과 같이 미술이 꼭 있어야 할 공간에는 미술이 없고 새로 짓는 건축물에 껌딱지처럼 붙는다. 정작 중요한 공공영역은 기능 중심의 흉포한 공간으로 방치되고 개인 개발업자의 건축물에는 설치가 강제되는 것이다. 공공영역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사적 영역을 강제하다? 엄청난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사적 영역의 미술 참여에 의존하고 있으니 공동체 활동을 담아내는 문화적 공공영역으로서의 공공미술이 있을 리가 없다. 시간에 기반을 둔 일시적 작업, 시민들과 관계를 중시하는 커뮤니티 아트, 정치적 각성을 중시하는 뉴 장르 퍼블릭 아트는 재주 없는 미술가가 하는 예술인양 폄하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우리 공공미술의 운명은 건축주의 입맛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들이 운영 주체 아닌 주체이기 때문이다. 공공미술의 비전과 미션, 솔루션을 담은 마스터플랜이나 발전계획이 아니라, 건물 지을 때마다 건건이 부착되는 미술장식의 유행에 공공미술의 운명을 거는 난센스적 상황이 한 세대 째 지속되고 있다.

## 2. 미술장식제도 제·개정 경과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건축물 미술장식조항은 1972년 도입된 이래 다수의 개정을 거쳤지만, 중요한 개정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미술장식 제정 및 개정 경과>

시기	압력(pressure)	대응(respond)	비고
1972. 8	도시 미화 정책 필요 외국사례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시 건축물 미술장식 조항 제정(권장사항,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비의 1%
1984. 7	서울시의 이미지 미화 (아시안게임, 서울올림 픽 등 의식)	서울시 의무사항 조례 제정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의무이행 강 제화	건축비의 1%
1995. 7	95년 대통령 공약 선정	건축물 미술장식 의무사항으로 개정 : 미술장식 1% 상향, 연면적 1만㎡ 이상	1988년 연면 적 7천㎡ 하향
1997	규제개혁 폐지 요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규제개혁작업단 식 제 또는 완화 권고 : 문화체육부와와의 합의 도출 못해 백지화	
1999. 3	규제개혁위 완화 결정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의무 완화 결정 : 문화관광부 문예진흥법 개정. 1% 이하 로 하향 조정, 2000. 1월 발효	2 만 ㎡ 까 지 : 0.7%, 2만㎡ 초과 시: 0.5%
2004	공공미술 모색	문화관광부, 미술장식 문제 개선 및 도시 경관 기여 위해 공공미술로의 개정 추진 :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문 화관광위 계류 중	미술계 내 이 견, 갈등
2006. 5	국가청렴위원회 권고	미술장식 개선 조치 권고 및 중장기 과제 로 폐지 또는 가격 제한을 작품성 제한으 로 개편	문화관광부 미 술계 의견 수 렴

미술장식 제도의 제정 및 중요한 개정의 경과를 살펴보면, 2004년 이후 공공미술로의 제도 개선 노력을 제외하면, 미술 내부의 성찰이나 필요에 의해 제도가 변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압력에 의해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런 압력에 대한 미술의 대응이 매우 피동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술의 순기능을 실현하지 못한 채 잦은 비리와 졸작들을 양산하는 것에 대해 경제, 행정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술 설치 의무를 폐지하려는 시도들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미술계는 문제 해결을 뒷전으로 한 채 문화예술 진흥과 도시 미화라는 헛된 구호만 지속적으로 외치며 시장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왔다. 미술 없는 두 부류의 타협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0.5~0.7% 차등 적용이라는 수치에 있다. 공공미술의 역할이나 도시 경관이나 정체성, 도시공동체의 활동을 모색하는 참 목표에 대한 갈등과 논쟁은 관심 밖이었다.

이처럼 미술도 없고 공공성도 없는 미봉의 와중에 만들어진 건축물 미술장식의 현황은 다음 표들과 같다.

<표2: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단위 : 점/백만 원, 2004.12.31기준; 문광부 자료)>

구분	건축물 연면적(㎡)					계	
	1-2만	2-3만	3-4만	4-5만	5만 이상	수량(점)	가액

'96-'99년	282	246	210	105	687	1,530	57,091
2000년	43	75	78	72	351	619	33,204
2001년	112	85	151	63	358	769	55,380
2002년	205	128	117	58	239	747	51,562
2003년	205	196	82	77	425	985	71,225
2004년	202	152	129	69	407	959	69,959
계	1,049	882	767	444	2,467	5,609	338,421

<표3: 장르별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 (단위 : 점; 문광부 자료)>

조형예술물							환경조형물						합계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기타	소계	벽화	분수대	상징탑	기타	소계		
1,293	3,995	33	18	42	59	5,440	66	18	25	60	169	5,609	

### 3. 미술장식 제도의 문제점

현행 미술장식의 문제로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 건축비용 일부를 미술작품에 의무적으로 할애할 만한 건축주의 문화적 참여 동기가 부족
- 비양심적 미술인, 심의 과정에서의 담합 등에 따른 편의주의적인 작품 설치
- 설치비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되는 예술성이 낮은 미술품 양산, 도시경관 훼손
- 작가 선정 및 작품 설치 과정이 건축주에게 일임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미흡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의 한계
- 사후 심의의 한계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미술품 가격에 대한 심의가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심의 탈락 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약간의 수정보완 이상을 강제하기 어려운 현실임
- 화랑, 조형연구소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데 따른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 노출

이러한 지적들은 드러난 현상만 따진 것들이다. 공공미술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을 만들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미성숙, 즉 문맹(文盲)을 미술계의 무능력과 부도덕으로 대속(代贖)하려는 의도로 읽혀지기까지 한다. 미술의 잘못이

적다고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단은 총체적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건강하지 못한 신체에 병균이 물리는 건 당연하다. 몸이 아플 때 병균을 욱하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체 시스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더욱 필요하다. 위와 같은 지적은 시장관을 만들어놓고 장사한다고 야단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다음과 같은 진단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 사회는 공공미술을 사회적 결핍을 보완하는 사회적 수단(cultural capital)이라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미술에 대한 비전, 미션이 없고 사회의 필요를 보완하는 솔루션을 갖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제도 운영의 실패이다. 서구 공공미술은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과생되는 압력(pressure)에 대응하는(respond) 생존 및 경쟁력 강화 전략 차원에서 제도로 도입된다. 생산력의 산업도시, 이미지의 탈산업도시, 창의력의 창조도시로 도시의 경쟁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산업도시는 미술장식, 탈산업도시는 공공미술과 디자인, 앞으로 도래할 창조도시는 도시 삶 자체가 작업이 되는 그랜드 디자인을 도입한다. 문화적으로 성숙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의 경쟁력, 살 수 있음(liv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자 사회 기간행위로 문화예술을 제도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제도는 이러한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행정은 그런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제도와 행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미술장식은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멀리 뒤떨어져 있고 도시 삶의 요구에 무신경하다.

셋째, 미술은 사회적 역할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필요를 정당화하지 못했다. 미학적 위계 위에서 강박하는 것으로 미술의 사회적 정당성을 주장할 뿐 미술적 쓸모로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공적 인식이 절대 부족했다. 때로는 앵벌이 식으로, 때로는 조폭 식으로 미학적 정당성을 구걸하거나 강박했을 뿐, 우리 사회의 필요를 찾고 해결하는 사회적 행위를 미학적으로 디자인하지 못했다.

#### 4. 규제개혁과 청렴 감시 대상으로서의 미술(장식)

미술의 사회적 역할은 미술 내에서만 일방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미술이 아름다움으로 아름답지 못한 사회를 보완하거나 비평하고 토론한다는 미술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건축물 앞에 성장된 조형물은 건축주와 미술작가들의 천국일 뿐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이렇다 보니 공공영역에 설치되는 미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작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화적 리더십 능력을 돕고 성숙시키는 역할은 일찌감치 포기된다.

매년 반복되는 알선수재, 심사비리, 리베이트 등 미술장식을 둘러싼 비리 발표는

미술인들의 기본 양식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그런 의문의 대상들이 만드는 작품에 시민들이 다가설 리 없다. 이 틈을 파고 미술 무용론이 기회만 있으면 제기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공공미술의 순기능에는 눈을 감은 채 개발사업의 이윤 추구에 걸림돌인 미술장식의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해왔다. 1997년 미술장식의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했다가 실패했지만, 더욱 강력한 단체로 위상을 조정한 이후인 1997년 다시 완화를 주장해 1%를 0.7~0.5%로 하향시켰다. 이 단체는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술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 하나의 기관은 국가청렴위원회이다. 이 단체 역시 미술장식을 부패 방지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 단체는 미술장식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공모제 도입, ▶청렴도 측정 실시, ▶심의위원 등에 대한 엄격한 윤리성 제고(심의위원의 관내 출품 금지, 비리연루 작가의 출품 금지, 미술장식 표식 설치 의무화),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화 등을 권고했다. 부패 재발 등 개선이 미진할 경우 ‘미술장식의 무설치제도 폐지’ 또는 ‘설치비용 제한을 작품성 제한으로 개편’ 등 근본적 개선대책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비리로 얼룩진 미술장식의 관행으로 두 단체의 주장을 시원하게 반박할 수 없는 입장이라 아쉽다. 하지만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고 도시 공동체의 활동을 디자인하며 기능적으로 건축되는 도시에 의미와 이야기를 심는 사회적 역할을 펼치는 공공미술에 눈을 감은 채, 불완전한 미술장식 제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들어 미술의 역할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총체적인 합리성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공공미술은 미술계 안팎으로 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 일의 핵심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미술장식을 미술도 살고 사회도 사는 공공미술로 바꾸는 것이다. 시장관을 짜는 미술장식을 문화적 공공영역을 만드는 공공미술로 바꾸는 것이다.

## 5. 공공미술의 새로운 도전

공공미술 제도의 도입과 운영은 미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미술계에서는 미술인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공공미술협회 등의 조직을 통해 미술장식을 공공미술로 전환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펼쳐왔고 문화관광부는 2004년 <새예술정책>에서 공공미술 도입을 위한 법 개정 계획을 공식 표명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미술장식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공공미술 활성화 연구> 등 공공미술 관련 TF들을 잇달아 꾸리면서 공공미술 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했다. 앞의 TF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및 공공미술 제도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뒤의 TF는 공공미술을 통해 도시 마을을 재활할 수 있는 방

안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개의 TF를 통해 현재 국회 문화관광부에 계류 중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현재 전국 11개 지역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는 공공미술추진위원회라는 외형적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미술장식의 공공미술로의 전환을 살펴보자.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협소한 ‘장식’ 개념에 한정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확대하는 것과 공공미술 제도 관리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다음 표와 같은 세부 사항들이 마련되었다.

<표4: 제도 개선 방안>

	방안	내용	비고
1	공공미술 도입	-공공미술 개념 도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환경과 문화적 경관 조성 의무 도입 -공공미술기금계정 신설	
2	미술장식 설치 이행 방법 다양화	-민간 건축주가 건축물의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기금에 출연할 경우 설치의무를 면제	*차등 옵션제 고려. 공미협 의 반발로 차등 삭제, 설치 또는 출연 양자택일로 조정 *공미협 출연제 반대
3	공공기관의 공공미술 이행 강화	-공공기관 공공미술 비용 1%이상으로 환원 -공공미술기금 기탁 의무화: 공공미술위원회 기획, 집행 -공공기관 범위 설정	*공미협: 1%중 30%만 기탁, 70%는 현행대로 집행
4	공공미술 운영기구 설립	-한국공공미술진흥위원회를 두어 심의와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각종의 사업 수행 -지방 공공미술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 운영	*운영 주체의 도입 *공미협: 위원회 권력 비대화 우려
5	심의 기능 강화	-미술·건축·공간디자인 등의 관계 전문가 3분의 2이상 포함: 심의 전문성 강화 -시·군 단위의 심의를 광역시·도 단위로 확대 운영	*공미협: 위원회로부터 심사 위 별도 구성, 공미위 기획도 심사위 심의 대상
6	공공미술 기획관리자 신고제도 도입	-중개역할을 하는 화랑, 미술조형연구소 등의 참여를 양성화하여 제도의 투명한 관리도모	*공미협: 허가제
7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설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자료 및 통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8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항 신설	-공공미술의 철거, 훼손 등의 경우 원상회복치 않을 경우 건축주 벌칙 조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획관리자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 조항	
9	기타 제도 운영 관련	-시·도지사는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한 작품	

보완	의 제작·설치를 권유 -건축주 및 작가 위주로 진행되는 상황 고려, 설치의무자와 기획관리자에 대해 보고나 자료 요구 가능	
----	--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건축물 미술장식의 문제를 극복하는 수준에서 공공미술을 논의하고 있고 비물질적, 시간적 공공미술을 수렴하지 않으며 문화적 공공영역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이지만, 공공미술의 운영주체를 민간 위원회로 설정하고 공공부문의 공공미술 참여를 확대, 강화하는 노력은 이전 제도에 비해 훨씬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큰 방향에서 이 개정안을 공공미술의 도입 기반으로 삼고 세부적으로 보완 및 추가할 경우, 공공미술의 사회적 역할은 상당 부분 쇄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미술협의회에서는 공공미술위원회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된다는 우려를 내세워 공공미술위원회의 기획 부문 축소, 심의위원회 별도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주의 기금 출연은 공공미술위원회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술시장을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기탁 기금 역시 공공미술위원회가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30%만 기금으로 기탁하고 나머지 70%는 현행처럼 건축주의 직접적인 작품 설치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6. 결(結): 공공미술의 연착륙을 갈망하며

요즘 공공미술이 붐을 이루고 있다. 공공미술추진위원회의 11개 프로젝트가 전국에서 진행 중이고 작가나 미술그룹들의 자발적인 프로젝트도 전에 없이 늘고 있다. 서울시, 인천시,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개발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시대적인 것이다. 우리 시대는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에 인간적, 문화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문화적 행위를 요청하고 있다. 미술 역시 귀족이나 유한계층의 후원에 생존을 의탁하기보다 사회적 역할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미술 역할의 창의를 요구받고 있다. 미술이 제 솜씨 자랑에 빠져 삶의 아름다움, 시민의 일상으로 가닿지 못한다면, 공공미술의 붐 역시 수없이 많이 명멸했던 미술의 유행이나 스타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제 비즈니스를 디자인하는 일을 그만 끝내자. 캔버스 안, 볼륨 안이 아니라 그 바깥, 삶을 디자인하자. 미술이 사회의 당연한 일원이 되고 일상이 미술의 주인이 되는 ‘삶의 축제’를 디자인하자. 공공미술이 사회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 아름다운 작업을 통해 사회 역시 아름다움을 즐기고 꿈꿀 줄 아는 문화의 시대가 열린다.

## 계류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와 조정방안

윤태건, The Ton 대표

### 1. 미술장식이거나 혹은 공공미술이거나...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도시문화 환경개선'과 '미술창작활동 진흥'을 위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할 때 건축 비용의 1%이하를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로 서구에서는 "예술을 위한 퍼센트법(Percent for Art)에서 유래되어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두어 1982년 권장사항으로 출발, 1995년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면서 양적인 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문화관광부 공공미술제도개선공청회 자료집, 2005)

- 미술장식제도는 그간 삭막한 도시 공간에서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문화 환경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
- 특히 IMF이후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있던 한국 미술시장의 진흥과 생계가 어려운 많은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

○ 그러나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리베이트 등 탈법과 비리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며, 제도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도시 경관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미술장식이라는 협소한 틀 안에 담아내기 힘든 공공미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충족시키기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 리베이트 등 탈법과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 장식개념에서 벗어나 비물질적, 비영구적인 작품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념의 확장
- 건축주 및 미술인들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조치와 문화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필요성

○ 따라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공공미술제도개선의 대의와 취지에도 불구하고 목적에만 매몰된 채 현실적, 합리적 개선방안이 도외시된다면

오히려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공공성의 일방적 강조로 사적인 예술 행위와 경제적 행위에 대해 매도하는 태도
- 해외 공공미술의 변화단계를 도식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존 제도, 작품에 대한 배타적 인식
- 미술시장에서 차지하는 공공미술시장의 역할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개선 방안
- 공공미술에 대한 공론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고, %를 둘러싼 지루한 숫자 게임, 위원회의 운영에 집착하거나 매몰되는 모습
- 결국 현실적, 합리적 개선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핵심적 개선안이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

## 2. 미술시장의 현황과 공공미술시장과의 관계

○ 정확한 수치나 통계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국미술시장의 전체 규모는 2004년<sup>1)</sup> 기준으로 약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제법 큰 규모라고 여겨지지만 해외미술품, 이발소그림, 미술장식품<sup>2)</sup>을 제외하고 실제 국내 작가들의 작품이 거래되는 규모는 약 500억에서 600억 가량될 것으로 보인다.

- 공공미술시장 2004년 약 800억원(건축물미술장식품 723억)으로 국내 작가들의 거래량을 합친 것 보다 많음
- 2005년 하반기부터 해외경매,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미술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거래량이 증가(약 800억에서 1,000억 가량 추산)하고 있으나 공공미술시장과 거의 대등한 규모
- 미국 등 선진국 미술시장에서 공공미술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국내 50% 내외)
  - ※ 실제 해외 미술계에서 미술장식제도를 미술문화지원에 모범적인 제도로 부러워함

1) 2005년 하반기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 2006년 현재 약 3,500억에서 4,000억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경제규모에 비해 미술시장이 비중이 극히 미비하여 최소 현재보다 5배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2) 한국미술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해외미술품 수입으로 약 1,000억원에 이르며, 그 다음으로는 삼각지 등에서 생산되고 일반적인 미술시장의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는 소위 '이발소그림'이 약 7, 800억원, 역시 미술시장의 유통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공공미술시장이 약 800억원 정도가 된다.

○ 공공미술시장은 이처럼 한국미술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시장시스템과 차이로 인해 자체 딜레마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 같은 딜레마를 공공성 강화라는 일방의 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자칫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소지가 크다.

- 공공미술시장은 생산-유통-소비 과정을 거치지 않음. 생산의 경우에는 주문생산이 주를 이루며 유통 과정이 왜곡되어 있으며, 특히 재소비가 불가능하여 시장에서 검증이 어려운 작품이 막대한 금액으로 생산, 소비됨.

※ 시장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시장에서 자체 정화, 검증되기가 힘들어 외부(법, 제도)등에 의해 제도 운영을 의존하게 됨

- 민간 중심의 재원 조달에 대부분 의존하여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혼재된 양상을 보임

- 특히 공공미술은 외부, 즉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어 시장 형성의 당위성이 취약하여 제도 변화가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 이처럼 공공미술시장(또는 미술장식품시장)은 일반적인 미술시장의 유통구조와 다소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술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커서 제도 개선의 향방에 따라 미술시장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치게 된다.

- 해외 공공미술의 경우 시장논리가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의 경우 시장논리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임

- 따라서 공공성의 강조도 필요하지만 시장에 적대적인 개선안은 위험함

※ 청렴위 등에서 간헐적으로 나오는 ‘폐지론’ 등에는 미술계 전체가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물론 미술시장 규모가 빅뱅할 경우 장기적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연착륙할 수도 있음

- 결국 시급하게 리베이트 등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공공성 강화는 현실적, 합리적이며 시장과 공존하는 것이 필요함

### 3. 공공미술법안의 문제점과 조정방안

○ 현재 공공미술 법안은 직접적으로 참여정부 출범 후 문화관광부에서 정책입안한 ‘새예술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2004년 1차 공청회와 2005년 2차 공청회를 거쳐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와 문광위 김문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가 첨부된 상황이다.

- 대의명분과 행정, 제도를 앞세워 추진하려는 공세적인 입장과 현실적인 상황과 미술계여론을 배수진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수세적인 입장이 단계별로 계속 부딪혀 온 형국
- 미협, 화랑협회, 전업작가회를 주축으로 결성된 공공미술협의회는 최초, 제도 개선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였으나 연구보고서 발간, 2차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자체 연구를 통해 개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공공미술의 도입이 시대적 대세라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전환
- 그러나 대행의뢰제, 옵션기금제, 공공미술기구의 권력화 등 제도개선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 반면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취지와 목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옵션기금제, 대행의뢰제 등 현실적인 조건을 도외시한 연이은 패착으로 제도 추진의 강한 제동이 걸려온 데다,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다소 주춤해진 상태

○ 이처럼 법안을 밀어붙이는 쪽과 막으려는 쪽이 계속 논란을 거쳐 오는 과정을 돌아보면,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변증법적으로)공공미술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대세를 굳혔다는 인상이다. 하지만 과연 공공미술이 무엇인가?를 둘러싼 동상이몽은 여전히 있다. 여전히 공공미술을 바라보는 시각차, 인식차가 크며, 더구나 현실 적용의 방법론의 차이는 좁혀졌다고는 하나 아직 멀게는 느껴진다. 더욱 큰 문제는 3년여에 걸친 제도 개선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뭔가 핵심적인 사항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 이 같은 점은 %와 기금 조성을 위한 지루한 숫자 싸움, 공공미술위원회의 운영을 둘러싼 자리싸움에 매몰되어 보다 중요한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공론화, 미술계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데서 나타남
- 특히 계류된 법안에서 사실상 뉴장르 공공미술, 비물질적, 비영구적 미술행위 등 공공미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부족함
-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계가 통일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 주어진 재원을 누가 차지하는가에 주요 관심이 쏠려 실제 다양한 공공미술을 하기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함

※ 파이를 키우지 못하고 전체 파이가 축소되더라도 내 파이만 크면 된다는 사고

○ 1차, 2차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몇가지 변화가 있었으며 상당부분 의견이 좁혀

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지만 되짚는 의미에서 핵심적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 시장 축소와 리베이트의 확대재생산을 가져올 '옵션기금제'와 기금 조성의 의지가 엇보이는 '선택기금제', '의무기금제'의 도입

○ '새예술정책'과 1차공청회, 2차공청회에서 제시된 '옵션기금제'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기금에 출연할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토록 하되, 0.7%에서 0.5%로 할인(1차공청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 할인(2차공청회)" 하는 것으로 시장 축소와 리베이트의 확대재생산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

- 할인된 비율만큼 당연히 미술시장이 축소됨
- 할인비율이 작으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크면 기금납부는 많아지지만 시장축소가 자명함
- 조금씩 없어져 가는 리베이트를 정부가 나서서 고착화, 관례화, 확대재생산화 시키는 격

○ '옵션기금제'의 문제점들이 나타나자 계류법안에서는 민간건축주는 '선택기금제'로 공공건축주는 '의무기금제'로 이원화시켜 상정하여 기금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민간건축주의 '선택적 기금제'는 시장 축소나 리베이트의 위험성이 없으며, 건축주의 의무이행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과연 건축주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기금납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 결국 선택적 기금제는 정부, 지자체에서 기금 출연을 유도하거나, 강제적인 조항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공공미술위원회에서 기금 조성의 목적으로 전횡을 할 경우 건축주의 선택권을 박탈하게 되는 상황 발생
- 공공건축주의 '의무적 기금제'는 0.7%에서 상향 조정된 1% 전액을 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몇%를 납부할 것인가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있음

※ 참고로 공공미술협의회는 0.3% 기금 납부 주장

○ 조성된 기금의 사용은 대체로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입장

에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몇가지 간과한 문제가 보인다.

- 공공미술협의회에서는 공공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보다 공모, 지명공모 등을 통해 민간에 개방할 것을 요구
- 공공건물, 예를 들어 시,도청사 등의 건축물에서 납부된 기금으로 공공장소에 작품을 설치하게 되므로 신축 건축물에는 미술품이 설치되지 않거나, 혹은 별도의 예산으로 미술품을 설치하게 됨.
- 결국 지자체에서는 이중부담이 되며, 이같은 문제로 공공미술위원회가 시,도청사에 미술품 설치를 '대행'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대행의뢰제'가 되는 모순이 발생함
- 또한 계류법안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공공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비물질적, 비영구적 작품 등 뉴장르공공미술을 수행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노정됨
- 법안은 또한 별도의 재원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하여 제도개선 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인 협소한 '장식'개념에 다시 갇히게 되어 개선의 취지가 퇴색하게 됨

## 2. 민간과 정부의 경쟁을 조장하는 '대행의뢰제' - 계류법안에서는 삭제

○ 대행의뢰제는 "건축주가 직접 설치하는 대신 시,도지사에게 대행 의뢰하면 대상 건축물에 적합한 미술장식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공공미술위원회의 기능과 맞물려 엄청난 부정, 비리를 양산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 1차 공청회에서는 없었던 내용이 2차 공청회에서 등장하였으며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 계류중인 법안에서는 삭제된 조항임
- 건축주가 직접 설치할 경우에는 강화된 심의 조건으로 심의를 받음
- 공공미술위원회에 대행의뢰된 작품은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서 건축주는 어쩔 수 없이 시,도지사에게 대행을 의뢰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결국 '대행의뢰제'로 말미암아 공공미술위원회가 자연스럽게 엄청난 금액을 운영하는 권력을 갖게 되며, 민간과 지자체가 공공미술 수주를 위해 경쟁을 벌이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 시,도에서는 공공미술위원회와 함께 건축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설치 대신 '대행의뢰'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갖게 됨
-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실제 건축주는 준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

행의뢰'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편의를 도모하거나, 제도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아님

### 3. 공공미술기구 - 권력기구나 지원기구냐의 논란

○ 공공미술제도 개선의 주요 포인트인 공공미술진흥위원회와 지역의 공공미술위원회는 “심의와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각종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1. 공공미술에 관한 계획 수립 2. 설치작품 심의, 감리 3. DB 구축 및 운영 4. 공공미술위원회 업무 지원 5. 조사,연구,교육 및 진흥사업의 시행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하에 공공미술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 공공미술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은 우선 얼마만큼 권한이 집중되느냐로 현재 법안은 기금운영을 포함하여 공공미술과 관련된 기획, 집행, 심의까지 한곳에 집중되는 형태

- 이 경우 공공미술위원회에서 기금 사용을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대한 견제장치가 전혀 없는 반면 민간에서 설치할 작품까지 강화된 심의 기능까지 갖게 되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됨

- 결국 인적구성의 문제와 운영의 묘를 살리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것임. 자칫 권력의 집중과 전횡이 우려되며, 특히 위원회 구성에서 코드인사에 대한 비판, 소외된 진영의 불만과 발목잡기 등으로 태풍의 눈이 될 것이 분명

○ 2차 공청회에서는 기존 심의위원회를 공공미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공공미술위원회의 기획기능과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이 합쳐지게 되면서 분란의 소지를 제공하였다. 이후 계류된 법안에서는 다소 수정되긴 하였으나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 공공미술협의회에서는 공공미술위원회가 기획, 집행기능 자체를 갖는 것조차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공공미술에 대한 연구, 조사, 홍보, DB구축 등 지원업무에 국한할 것을 요구

- 기금의 사용과 뉴장르공공미술 추진 등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의 기획, 집행 기능이 필요하지만 기획, 심의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반듯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함

○ 심의위원에 대한 윤리성 제고와 위원회 운영의 객관화, 심층화가 필요하며 대상 작품을 떨어뜨리기 위한 네거티브 방식에서 보다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포지티브

브 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광역시, 도별로 심의위원풀 구성, 심의위원 교차제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 비리연루 작가, 대행인, 심의위원 등의 출품 금지 등 세부적 행정 규제 마련
- 심의위원에 큐레이터, 평론가 등 이론분야의 보강이 필요하며, 가격심의를 위해 화랑 관계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
- 일정금액 이하는 심의 간소화, 이상은 다단계심의 또는 심층심의, 한 작가의 여러 안에 대한 심의 등 보다 적합한 작품 선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

#### 4. 기획관리자 양성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방안의 필요성

○ 통칭 브로커로 폄하되었던 중개업체를 양성화하고 기획관리자로서 기획, 심의, 설치 등 제반 업무를 대행하게 된 것은 대체로 환영받고 있으나 수수료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 계류법안에서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수수료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1차, 2차 공청회의 내용으로 미루어 25%를 상한선으로 보고 있는 듯함
- 수수료는 정당한 영업행위의 일환이므로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체로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분위기
- 공공미술협의회에서는 입체 30%, 평면 40%를 주장
- 현실적인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면계약이 횡행할 우려가 있으며, 중개업무의 성격, 금액에 따라 차등제, 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 기획관리자의 등록은 양성화의 일환으로 반듯이 필요하지만 계류법안에서는 신고제로 규정되어 있어, 취소 후 1년 후 재신고가 가능하거나 특별한 요건이 없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신고가 가능하여 자칫 실효성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

- 결국 기획관리자의 난립과 출혈, 과당 경쟁으로 이면계약 등 불법이 난무할 위험성 잔존
- 일정한 자격 조건을 두어 전문성과 투명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 도입이 필요
- 공공미술협의회에서는 1회 취소시 1년 동안 허가 불가, 2회 취소시 3년 동안 허가 불가, 3회 취소시 영구적으로 허가 불가 등 보다 엄격한 제재조항을 요청

- 기획관리자만 심의접수가 가능해야 이면계약이 근절(작가는 현재처럼 기획관리자 허가 없이도 작품 제작이 가능)

## 5. 기타

○ 공공미술의 발전단계(건축 속의 미술, 공공장소 속의 미술, 도시계획 속의 미술, 새로운 장르의 미술)를 도식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존의 작품에 대한 편향적 시각이 나타난다.

- 우리나라에서는 '건축 속의 미술' 단계의 장식 개념에 머물러 있어 보다 진전된 개념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논리이며, 이처럼 공공미술을 4단계로 도식적으로 분류하고 각 단계를 '발전'이라고 바라보면 필연적으로 이전 단계의 작품 형태들은 자연스럽게 '시대에 뒤떨어진, 후진' 작품으로 폄하될 수 밖에 없음.

○ 계류중인 법안은 그 취지에 맞는 필요한 재원에 대한 확보 방안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형태다.

- 공원, 광장 같은 장소의 컨텍스트에 적합한 공공미술작품이나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의 시행을 건축주의 기금으로 확보된 재원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해 보임

- 해외에서처럼 항만,도로,공항,학교 등 공공미술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건축, 건조물에는 제도를 확대, 적용시키고, 별도의 공공미술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문제점은 일부 작가, 브로커, 건축주에게 있으니 앞으로는 기금을 모아 발전적인 공공미술을 해보자는 논리는 정부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임

○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행정지도로 건축주로서는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강제조항으로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다.

- 공모제의 도입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진행비, 공모참가비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
- 일괄적 공모 권장 보다는 건축주의 자율에 의해 공개공모, 제한공모, 지명공모, 수익계약이 보장되어야 함
- 공모시 심의 점수 가점,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금액,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 방안 필요

○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리베이트, 이면계약, 탈세 등 불법, 비리 등은 행정당국의 의지와 강력한 벌칙 조항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 리베이트와 관련된 신고포상제(작가, 대행인, 건축주 등)의 도입, 행정처벌 강화, 작가, 대행인의 영업 정지 등 보다 강력한 벌칙을 통해 근절하려는 의지를 행정당국에서 천명

- 자체 정화와 지속적인 개선마인드 고취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각종 인센티브 개발

## 5. 발상의 전환과 현실에의 천착

○ 주지하다시피 공공미술제도로의 이행과 제도개선은 도도한 흐름이다. 대세이자 정도다. 그러나 제도개선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부 독소 조항은 결국 또 다른 미술권력을 태동시키고 또 다른 비리를 양산시키게 될 것이다. 현실적인 개선방안은 외면한 채 밀어붙이기식이나 대세에 눈을 감은 채 버티기식 모두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라는 세간의 눈총을 받는 것이 아닐까?

○ 지루한 숫자 게임과 자리 싸움에 매몰되면서 정작 공공미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는 뒷전으로 밀려버렸다. 결국 다양한 형태의 공공미술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 리베이트 등 불법적인 행위의 근절이 계류중인 법안으로는 뵈족히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어찌면 무늬만 공공미술이라는 자조가 나오기도 한다.

○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2004년 1차 공청회 당시에 비해 많은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직까지 기금 조성과 기구 운영에 관한 몇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인식의 전환만 이뤄진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발상의 전환과 현실에의 천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계류법안의 변천과정 및 차이점

주요 내용	1차공청회(2004년)	2차공청회 (2005년 5월)	민병두의원법안 (2005년 10월)	문광위전문위원 검토안(2005년 11월)	공공미술협회의 의견
개념/용어	미술장식에서 공공 미술로 변경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와 창작활동진흥 및 사회문화적 기능 제고	동일	동일	동일	찬성하나 공공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해서는 안되며, 현실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공공 기관 설치 비율 상승	1%로 상승	동일	동일	동일	찬성
공공 미술 위원 회 (중앙)	공공미술센터 - 기금관리운영,DB구축, 조사,교육,연구 기능	한국공공미술진흥위원회 - 계획수립,DB구축,공공미술위원회 지원,조사,교육,연구 등의 기능, 공공미술 기획단 설립	동일	동일	-기구 구성은 동의하나 공공미술위원회의 과도한 권력 집중은 또 다른 비리의 온상지가 될 수 있음 -기획, 심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것은 안됨
공공 미술 위원 회 (지역)	지역 공공미술센터 설립 별도의 심의위원회 존재	광역단위 공공미술위원회 설립, 기금 운영, 미술작품가격, 설치 등 심의	동일	동일	-연구,조사,홍보,DB구축 등 지원업무에 국한
심의 위원 회	공공 미술 센터에서 구성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 기능을 강화	필요시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동일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여 권력 집중을 견제
민간 건축 주 기금 납부	0.7%에서 0.5%로 기금 납부시 설치 의무면제 (옵션기금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할인하여 기금 납부시 설치의무면제 (옵션기금제)	할인 없이 기금 납부시 설치의무면제 (선택기금제)	-기금출연을 유도하여 사실상 강제 조항이 될 가능성 우려 -설치작품의 소유권이 건축주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결과, 제도를 '부담금'으로 변경시키게 됨	-옵션기금제는 시장 축소 및 리베이트를 확대재생산함 -선택기금제는 사실상 강제조항이 될 개연성 큼
공공 건축 주 기금 납부			전액 기금 납부 (의무기금제)		0.7%에서 1%로 상향되는 0.3% 기금 납부
기금 의 사용	공공장소에 미술장식 설치	동일	동일	동일	찬성하나 공모 등 민간에 개방
대행 의뢰 제	없음	건축주가 시,도지사에게 작품 설치의 대행을 의뢰	없음	없음	공공미술위원회의 기능과 맞물려 부정,비리의 진원지가 될 수 있음
설치 절차(공모)	없음	공모를 통하여 설치 권장	동일	사실상 강제조항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일정규모 이상으로 공모대상을 규정	지자체에 따라 강제조항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높음
기획 관리 제도	지표개발로 등급제 고려, 난립방지, 폭넓은 참여보장	신고제	동일	자격요건을 명시(허가제)	신고제는 실효성 떨어지며 업체난립, 출혈과당경쟁으로 허가

수수료	차등 수수료(25%제시)	문광부령에서 정함(25%제시)	동일(구체적 %는 누락)	동일	제 필요 현실적인 차등 수수료
별척조항		취소시 1년내 재신고 불가	동일	취소사유규정이 명확해야 함	리베이트 근절,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별척조항 대폭 강화
기타					-작가독과점방지, 광역심의위원뱅크제, 다단계심의제도 등



## 예술공론장으로서의 새로운 공공미술

김준기(공공미술추진위원회 팀장)

물질형식을 빌어 영구적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미술장식품과 같은 공공미술이 낮은 단계의 공공미술이라면, 비물질적이며 비영구적인 공공미술을 포괄하는 새로운 형식과 태도의 공공미술을 새로운 공공미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기존의 건축물미술장식품 개념의 낮은 단계의 공공미술과 한국의 현장미술이나 서구의 뉴장르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과 같은 새로운 위치의 공공미술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새로운 공공미술과 그렇지 않은 공공미술을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예술적 실천으로 매개하며 새롭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당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새로움의 효용성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매우 난감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구분은 미술을 심미적인 물질형식으로만 규정하는 데 동의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예술공론장 논의는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것은 미술을 심미적 오브제의 창작과 향유의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의 예술적 실천으로까지 확장해서 사고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몇몇 논고들을 재구성한 이 글은 새로운 단계로 변화하고 있는 공공미술의 가능성을 포착해내기 위하여 새로운 공공미술과 현장미술, 그리고 예술공론장 논의를 검토할 것이다.

### 새로운 공공미술

공공미술은 미술의 역사와 함께 존재한 미술 창작과 매개와 소통에 관한 일체의 방식들 가운데서도 특히 근대적 예술개념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공공미술은 근대적 의미의 예술개념이 창안된 이래 지속되어온 모더니즘 예술의 폐쇄적인 창작과 매개, 소통의 방식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공장소에서의 미술, 공공적 의제를 다루는 미술, 공공기금으로 조성된 미술 등 다양한 형식과 태도를 가지고서 미술에 있어서의 공공성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공공의 요청으로 제작되어 사회적 맥락과 참여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미술은 특정장소의 역사성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포스트모더니티 논의는 모더니티의 체계적인 영역분할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탈분화 과정을 해명함으로써 미술의 실천적 영역과 창작 방식에 있어서 실재와 기표, 현실과 예술 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에 당위성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일상생활의 미학화 개념이나 매체, 스타일, 장르의 해체와 중복 등 미술 영역

의 확장과 다원주의적 양상은 미술의 탈제도화나 사회적 실천들과의 통합 등과 같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공공미술은 예술의 대사회적 자기정당화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다. 60년대 후반 이후 서구에서 진행된 공공예술(public art)의 실천적 전략들은 공공재로서의 가능성을 담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술의 거처를 전시장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로 치부해왔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공장소에서 공중과 만나는 예술적 장치로서의 공공예술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공예술은 공공재로서의 실천적인 함의를 내포한 예술개념이기 때문이다. 공공미술이라는 담론이 유포되기 이전에도 미술을 전시장에서 열리는 전시라는 틀에 한정하는 관행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제 미술은 전시장 안에서의 게임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전시장에서 열리는 전시가 미술의 언어 게임에 갇히면서 비평적 활기를 잃고 자본주의적 교환가치에 부응하면서 비평적 맥락을 상실하는 반면, 새로운 유형의 예술 실험들이 공공영역을 형성하면서 예술의 공공적 소통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

새장르공공미술 논의에서 말하는 ‘행동가로서의 예술가’의 지위는 새로운 공공미술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시사적이다. 수잔 레이시에 따르면, 예술가의 행위 과정은 ‘경험, 분석, 보고, 행동’의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공공적인 예술이란 ‘개인의 경험에 따른 주관성적 감성을 공감시키는 단계로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며, 나아가 새로운 함의를 세워내는 과정’으로서 예술행위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공공미술의 함의를 살리기 위해 주목해야 할 맥락은 오늘날 사회운동과 문화예술운동이 적극적인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영역(public sphere)에서의 예술적 실천은 공론장에서의 예술가의 지위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경험자로서의 예술가-분석가로서의 예술가-보고자로서의 예술가-행동가로서의 예술가

주관성의 공감 ----- 정보의 공유 ----- 상황에 대한 해답 ---- 새로운 함의  
도출

private art ----- public art

위의 분석에 따르면, 예술가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치는 예술가이자, 예술가 집단의 조직가이며, 특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보고하는 이슈 파이터이자, 정치적 맥락을 잡아내는 사회적 퍼포먼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공공미술은 환경조형, 장식미술, 대지미술, 장소지정형 미술(Site Specific Art) 등을 포괄하는 낮

은 단계의 공공미술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새장르공공미술 논의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 개념은 물건으로서의 작품을 남기는 것을 넘어 행위 과정을 중요시하며 프로그램 운영으로까지 예술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공공미술의 출현은 행동주의 예술의 전략적 단초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새장르공공미술 개념은 ‘예술을 통한 공동체 건설, 사회적인 표현, 공공적인 안건을 만드는 새로운 미술가의 역할’ 등의 특성에서 드러나듯이, ‘주제의 문제나 장소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활성화된 가치체계의 미학적 표현’을 시도하는 참여적 성격이 강하다. 공공미술은 ‘다양한 관객들과 삶의 이슈를 소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사용하는 시각예술’을 의미하며, ‘장소(site)의 역사적, 생태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관심으로 관객과의 관계설정을 모색하는’ 미술행위이다. 따라서 공공미술론은 ‘특정 공간 대상의 미술행위, 현실 개입의 실천적 경향성, 장소와 동시대성을 공유하는 현장성 획득’ 등에 있어서 현장미술과의 접합의 지점을 형성한다. 특히 새장르공공미술 논의는 상호작용, 관객, 효과 등에 관한 논점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미술 논의의 확장적 양상을 해명하는 데 유의한 논점을 제시한다.

### 현장미술과 공공미술

시각 영역의 창작과 소통에 관한 일체의 행위와 개념과 제도를 말하는 미술이 공간적 특성과 동시대의 시대적 정황을 포함하고 있는 현장(現場, insitu)이라는 개념과 결합한 현장미술은 1980년대 한국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피어난 전위적인 예술 개념이자 실천이다. 현장미술은 삶의 영역과 심미적 영역을 통합적 시각으로 접합하려는 적극적인 미적 실천이자, 동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미술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능동적인 개입의 산물이다. 이러한 미술 흐름은 역동하는 변혁의 힘이 팽배해있던 80년대 한국사회에서 구체적인 실천의 장으로 존재했던 영역이다. 현장미술의 흐름을 통해 한국 미술의 변동과 확장적 양상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현장성이 가지는 미적, 실천적 지위를 확인함으로써 현장미술이 남긴 열린 미술의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향후 한국 현대미술에 동시대적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줄 대안적 비평담론으로 현장미술이 남긴 현장(성)미학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일이 될 것이다.

현장미술은 특수한 시공간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언명과 실천 영역을 구현하고자 했던 미술운동이다. ‘신명성, 공동체성, 민주성, 포용성, 개연성, 역동성, 현장성, 실용성, 유기성’을 띄는 문화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 전통과 현대의 가치통합, 미술 전문인과 대중의 미적 역량의 통합, 미술제도의 민주화’를 이루며, 현실 속에서 작품내용을 찾고, 대중성을 전제로 하는 현장성의 강화, 쓰임새에 따른 일상성과 현

장성의 공유 등을 강조했던 두령의 지향은 현장미술의 방향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현장미술은 ‘리얼리즘의 사실주의적 소통방식, 대중정서에 기반한 미술형식, 서사와 상징, 풍자와 해학, 역동과 서정을 담은 감동적 미술형식’을 주창함으로써, 리얼리즘 지향의 현실인식과 실천적 지향을 표방했다. 현장미술의 함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성, 공공미술론의 관객과의 상호소통 가능성 등의 논점을 포용한다. 특정 단위, 지역 또는 장소 뿐 만이 아니라 무형의 현실인식, 특정상황, 문화지형 등을 작업의 대상이나 영역으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미술은 ‘상황으로서의 현실에 대한 문화적 개입과 생산이라는 참여적인 형태의 미술행위’를 통해 현장성을 획득한다. 현장미술의 현장성이란 양식으로서의 리얼리즘을 태도로서의 리얼리즘 지향으로 재편하는 실천주의 미학의 요소이며, 확장된 개념의 리얼리즘 미술이 지향하는 동시대 현실과의 소통 가능성을 확보하는 조건이다.

현장미술의 뿌리는 사회운동적 미술실천에 있다. 전통미술의 긍정적인 요소를 계승해서 걸개그림이라는 양식과 공동창작 방식을 주창한 두령, 광주항쟁을 겪으며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대중미술교육에 나선 광자협 등은 전시장이라는 일상과 괴리된 공간을 벗어나 일상적인 삶의 공간과 민중의 투쟁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현장미술실천을 이끌어낸 선구적 역할을 했다. 전자의 경우 계급계층운동의 현장에 결합해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의 정서에 부합하는 미술적 실천으로 주로 노동미술의 경향성으로 나타났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이나 통일운동 등의 정치적 투쟁 현장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아방가르드 형태로 진행되었다. 현장미술은 대중이나 시민들과 직접 만나 문화소비를 넘어서는 문화생산을 실천적 영역에 도입하려 했으며, 조직적인 미술운동의 흐름 속에서 한 시대의 대세를 이루었다. 현장미술은 동시대성과 장소특수성을 동반한 것이어서 삶의 현장과 미술을 예술적 차원에서 매개하는 현장성을 구현했다. 특히 1987년을 전후로 한 한국 사회의 격변기를 맞아 이들의 미술실천을 파업의 현장인 공장, 농촌, 민주화 운동의 열기로 가득했던 집회장, 시위 현장, 민주열사의 장례식 등 급박한 흐름 속에서 노동미술과 정치선전미술의 전성기를 일구어냈다. 민미협과 민미련건준위 등의 미술가조직과 활화산, 갯꽃, 가는패, 노동미술위원회 등 수많은 창작소그룹을 통해서 활동한 다수의 익명의 작가들과 학생미술운동에서 헌신성을 발휘한 무수히 많은 미술가들의 활동이 리얼리즘 미술의 현장성을 전취했다.

전문공간에서의 심미적 소통에 머물렀던 미술의 영역을 동시대성과 장소성을 구현한 현장성 전취의 영역으로 넓혀 놓은 현장미술의 대사회적인 목적의식과 활동방식은 예술을 ‘예술 내부의 자율적인 흐름’으로만 파악하려는 경향과는 달랐다. 그들은 예술가로 살아남기보다는 시대정신에 충실한 당대의 활동가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가로서 예술가적 실천 모델을 찾고자 했던 이들로부터 새로

운 형식과 태도의 공공적인 미술실천의 맹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 초에 논의되었던 창작소그룹의 중요성이 90년대 후반 이래 대대적인 창작소그룹 활동으로 이어졌다는 점 또한 특기할만한 일이다. 현장미술 운동에 정신적 뿌리를 둔 창작소그룹의 발흥은 탈현대적 지형의 동시대 미술 속에서 새로운 예술적 실험을 지켜내는 전략적 실천의 단위로서 기능했다. 당대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들 현장의 예술가들이 환경운동과 여성운동, 생태운동, 소수자운동, 지역공동체운동과 만나 예술적 창의력을 발현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지난 시기에 일구었던 정치적 아방가르드로서의 현장미술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가까운 우리의 과거를 통해 동시대와 미래를 성찰하고 예견하는 일이다.

### 예술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

예술공론장 개념은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연구’의 핵심개념 가운데 하나인 문예적 공론장의 가능성을 도출하는 데에서 출발해서, 사회의 구조 안에서 행위하는 개인의 역동성을 강조한 행위자이론(agency theory)을 토대로 예술의 장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 나아가며, 행위주체들의 속성인 하비투스가 작동하는 예술적 행위공간으로서의 공공영역을 예술공론장으로 파악하는 개념적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과정들은 예술공론장을 능동적 행위주체로서의 예술가 주체의 ‘자율성’과 예술 창작과 향유 과정에서 형성되는 공론장으로서의 예술의 ‘공공성’이 공존하는 구조로 파악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공론장 개념은 예술영역을 공중의 소통의 장이자 집단과 개인 사이를 넘나드는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 규명한다. 이러한 논점은 공공예술의 실험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선보였으며, 오늘날 새로운 공공미술의 사례를 통해 그 실천적 함의를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술의 대사회적 자기 정당화 과정을 검토하며 사적인 코드에 가려져있던 미술의 공공성을 옹호하려는 태도가 공공미술이라는 하나의 예술 개념과 관행, 나아가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사회 안에서 미술로써 예술공론장을 만들어 내는 일이 공공미술의 핵심이다. 하버마스는 근대사회 이후 문예적 공론장과 정치적 공론장이 여론 형성과 공공성 형성에 기여해 왔으나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에 따라 문예적 공론장이 쇠락하고 정치적 공론장만이 현대사회의 매스 미디어와 결합하여 공공의 생동감을 잠식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문제는 예술과 정치의 관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예술은 과연 탈정치의 장이 될 수 있는가. 예술은 탈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치열한 문화정치의 장이다. 계급과 계층의 상충하는 문화적 감성이나 예술적 코드의 상호경쟁 시스템이다. 따라서 예술의 가치를 탈정치적인 것에서 찾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술은 문예적 공론장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이후에도 정치적 공론장과 결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은 예술 스스로 정치적 공론장과는 다른 차원에서 진정한 자율성을 획득하여 문예적 공론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다. 오늘날의 시각예술은 작업실과 전시장의 단선적인 구조로부터 벗어나 보다 역동적인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공의 장소 또는 영역 속에서의 미술의 지위와 역할을 새로이 묻는 새로운 공공미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유사 이래 존재해왔던 기념비적인 조상이나 건축과 결합한 조각의 모습을 재확인하거나, 건축물 앞 또는 도심 곳곳에 조각이나 벽화 작업을 남기는 방식의 20세기 중후반 패러다임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새장르공공미술은 이러한 예술의 지위와 역할에 주목하여 새로운 예술언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공공미술은 건축물 앞에서 세우는 환경조각’이라는 인식은 낡은 것이 되었으며, 미술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 열린 개념이자 제도이며 가치이다.

공공미술은 예술공론장의 해방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다. 예술공론장으로서의 공공예술은 체계적인 영역분할에 의한 근대성의 분화 과정에서 스스로 사물화한 예술적 소통을 탈분화 과정으로 인도하기 위한 탈근대적인 예술전략을 함유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예술은 제도화된 소통 영역으로서의 예술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론장과 예술의 맥락을 재검토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분화된 자율성의 영역인 자폐적인 예술 개념과 이를 극복하고자하는 탈근대적 예술 개념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일체의 규율과 속박들로부터의 해방을 모색하면서 사회적 수준으로부터 이탈한 모더니즘을 통합의 시각으로 재검토하여 공론장의 관점에서 예술을 파악하게 한다. 오늘날의 대다수의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적 행위들이 공공영역과 유리된 소통불가능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준조세 형태로 마련된 기금을 가지고 조성되는 건축물미술장식품들이 예술공론장으로서의 공공미술과는 다른 매우 사적인 예술적 창작과 매개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미술계의 심각한 장애가 아닐 수 없다.

예술공론장은 ‘자율성과 공공성의 공존의 장’이다. 사적인 맥락의 그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예술적 자율성은 공적인 맥락의 공공영역과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의 장에 놓인다. 공공의 문화 향유권에 합당한 예술행위를 위한 공존의 개념을 토대로 장소와 상황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과 참여의 영역으로 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자율성과 공공성의 공존 개념을 찾는 것이야말로 예술공론장의 주요한 작동원리 가운데 하나로 꼽을 만하다. 나아가 특정장소나 상황에 대한 맥락화, 현실개입으로서의 공공적 예술행위,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의 공공적 시각예술의 사례 등을 고찰함으로써 예술창작과 향유로 이루어지는 예술적 소통을 공리적 차원에서 융합하여 자율적이면서도 공공적 소통 가능성

을 열어두는 문화생산의 관점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더니즘의 아방가르드, 탈근대적 예술의 통합적 개념, 리얼리즘미술의 비판적 관점, 공공예술의 함의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자율성과 공공적 유용성이 상호 충돌하고 갈등하는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양자의 공존이 공공미술을 성공적인 공론장으로 이끌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지만 양자의 충돌 또한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점은 현장에서의 경험의 해답을 제공해 줄 것이다.

### 공공적 기재로서의 새로운 공공미술

문화예술적 개입과 실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공공미술은 특정 사안에 결합하여 명료한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사물화 하지 않는 정신으로서의 예술적 성과를 남긴다. 요셉 보이스가 심은 수천 그루의 나무는 특정 미술관이나 컬렉터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며, 그가 예술적으로 개입했던 녹색당은 한 예술가의 행동주의적 예술행위가 정치적인 파급효과를 이끌어낸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80년대 거리에서 수만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벌어졌던 수많은 집회와 장례식들은 당대의 시대정신을 집결한 웅대한 퍼포먼스였으며, 그 가운데서 시각적 장치물로서 훌륭하게 제 몫을 해낸 걸개그림들과 깃발, 상여 행렬, 영정그림들은 물신화의 덫에 걸리지 않고 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훌륭한 행동주의 예술가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탁월한 예술적 향기를 풍기고 있지 않은가. 공공영역으로서의 예술의 장, 예술공론장은 탈근대적인 예술가 주체의 행위를 보장하는 공간이다. 근대적 예술가 주체는 근대의 계몽프로젝트가 야기한 예술의 자율성 개념에 매몰되어 자본주의적 상품교환 체제에 호응하는 예술산업의 물신화와 상품화에 종속되었다. 예술노동과 예술향유 영역의 완벽한 분화는 극단적인 경우 배타적인 소통현상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 신화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나 새로운 야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방증하며 나아가 인간의 이성이란 새로운 야만과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엘리티즘과 포퓰리즘의 극명한 대비 속에서 오늘날의 타락한 예술이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을 만드는 계기로 작동한다. 오늘날 예술과 문화산업은 예술작품(상품)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역전된 가치전도의 상황 속에 놓여있다. 새로운 공공미술은 이러한 한계를 넘고자 했던 예술가들의 선구적인 실천 수준에서 체계적인 제도화 과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공공영역에서의 예술적 실천은 공공기재로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 기재는 공공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공적인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제도화 과정이 예술적 진정성을 훼손하여, 공공미술을 체제내적인 미술로 전락시키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미술에 대해서도 비평적 접근이 있어야 할 것

이다. 공공미술 비평은 기존의 사적인 미술에 대한 비평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공공미술과 관련한 검증이나 비평과 관련한 몇 가지를 예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미술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이나 현장에 대한 고려, 공공성에 기반한 목표 설정, 목표와 계획의 예술성과 창의성, 목표설정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방법 또한 주요한 고려 대상이다. 예술가의 실천행위와 주민참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는지, 현장에 맞는 매체를 선택했는지 등의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목표와 과정에 따른 결과에 대한 물음이다. 예술적 실천을 통해 발행한 결과가 공적인 공유를 이루었는지, 작가와 매개자와 협업자와 수용자들은 각각 자기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최초의 목표가 지속가능한 결과를 얻었는지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과정에 대한 기록 작업,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 예산집행의 합리성 등 검토해야 할 대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공공영역에서의 예술적 실천은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공론장은 ‘집단화된 사적 개인들의 영역’이다. 공공영역에서의 예술적 실천이란, 사적 영역에서의 예술 생산과 향유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거대담론의 영역이 잠재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총체성의 미덕을 견지하면서도 미시적 차원의 실천적 함의를 놓치지 않는 지역적 실천으로서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맞아 지역성이라는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로컬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성이라는 화두는 오늘날 새로운 예술개념의 첨단을 이루고 있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장으로 파고드는 일은 미시적 예술실천의 방법론 가운데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항목이다. ‘인권, 소수자, 여성, 인종, 계급, 노동, 국가, 가족, 지역주의, 전지구화 등의 문제에 대해 권력과 저항, 자본과 반자본, 전지구화와 지역주의 이슈’ 등을 뛰어 넘어 예술과 현실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영혼의 자유로움이 예술가의 몫이다. 이것은 예술가들이 공공영역을 형성하면서 예술적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이다. 참여와 개입을 실천하는 예술, 비판적 성찰로서의 예술, 전위적 이슈의 생산기지로서의 예술은 도구적 유용성을 넘어 그 자체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것은 건축물미술장식품 같은 낮은 단계의 공공미술을 극복하고 예술적 공론장을 형성하는 하나의 대안이다. 건축물미술장식품이 미술을 건축에 대한 장식으로 폄하해온 것은 그것이 미술을 심미적 가치를 담보한 물질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공미술은 그와 물질형식으로써의 공공미술을 포함하여 여타의 예술적 실천이 가지고 있는 성찰과 생산의 기능에 주목함으로써 예술적인 공공영역을 형성하는 주요한 매개로 자리 잡을 것이다.

## 참고자료

### 文化藝術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04
----------	------

발의연월일 : 2005. 10. 21.

발 의 자 : 민병두·이광철·한명숙·김재홍  
윤원호·정청래·강혜숙·임종인  
강창일·이인영·최규식·노웅래  
김재윤·이미경·우상호의원(15인)

#### 제안이유

미술의 다양한 기능 중 협소한 장식 개념에 한정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를 ‘공공미술’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며 미술창작 활동의 진흥 및 미술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미술의 기능 제고 및 제도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미술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환경과 문화적 경관의 보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 공공미술기금을 따로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 다.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공공미술진흥위원회를 둠(안 제11조의2 신설).
- 라.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공공미술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1항 단서 신설).
-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주가 될 경우 미술장식 부담 비율을 현행 0.7%에서 1%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1조의3제4항 신설).
- 바. 현재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의 “공공미술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의5제

1항 신설).

사. 공공미술위원회가 미술작품의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제3항 신설).

아. 공공미술 중개역할을 하는 화랑, 미술조형연구소 등의 참여를 공식화하여 제도의 투명한 관리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기획관리자의 신고 제도를 도입함(안 제11조의6 신설).



### 文化藝術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文化藝術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文化藝術振興法”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미술”이라 함은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및 전시되는 미술작품(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미술 작품을 포함한다)과 그러한 미술작품의 설치를 통하여 공공의 문화 환경과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문화 경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및 도시 계획·개발을 수행할 때에는 문화환경과 문화적 경관의 보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환경과 문화적 경관의 보존·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계정(이하 “공공미술기금”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공공미술기금의 조성방법, 용도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의2(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장의2 문화적 경관의 보존 및 조성

제11조의2(한국공공미술진흥위원회의 설립 등) ①공공미술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공공미술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진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미술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심의
2.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제작현황, 표준단가 및 작가 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5의 규정에 따른 공공미술위원회(이하 “공공미술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미술에 관한 조사·교육·연구 및 진흥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공공미술 진흥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⑤진흥위원회는 제4항의 심의사항을 검토·연구하고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흥위원회에 공공미술기획단을 둘 수 있다.

⑥진흥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 및 공공미술위원회 그 밖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의3(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화·조각·공예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술작품을 해당 건축물 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작품설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미술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공미술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미술기금에 출연된 금액은 공공장소의 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미술작품의 설치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건축주가 되는 경우에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의4(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 ①시·도지사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준 높고 다양한 미술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제작·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건축주는 건축 허가 또는 승인 후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미술작품 설치계획에 관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미술작품이 「건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1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공공미술위원회) ①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공미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공공미술위원회를 둔다.

②공공미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환경과 문화적 경관의 보존·조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미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하는 작품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 문화환경과 문화적 경관의 보존·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미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공공미술위원회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공공미술위원회에는 미술·건축·공간디자인 등의 관계 전문가가 3분의2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⑥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기획관리자의 신고 등) ①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미술작가의 선정, 미술작품의 기획·심의·설치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획관리자”라 한다)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획관리자의 신고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및 신고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7(수수료) ①기획관리자는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 대행에 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수료의 한도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③수수료는 제11조의3제3항의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금액에 포함한다.

제11조의8(신고의 취소) ①시·도지사는 기획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2. 신고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는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11조의9(보고 및 검사 등)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미술 설치의무자 또는 기획관리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공미술 설치에 관한 업무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에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과태료) ①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지사의 미술작품 원상회복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1조의6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